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2
------------	-----

2018.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18. 10. 17.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8. 10. 29. 회부)

## 2. 제안이유

지방분권 여건성숙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54조)
- 나. 市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시 자치구청장의 발언권을 위원장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보장(안 제59조)
- 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입체·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재정비(안 별표4)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18. 8. 9. ~ 8. 29.) 결과: 의견있음(별도 첨부)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중 구청장의 발언절차를 개선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조정하며 현행 제도 및 여건에 맞추어 위임기준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 구청장의 도시계획 발언권 보장 강화

- 안 제59조제2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sup>1)</sup> 심의시 사전승인 절차 없이 구청장이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발언권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서, 지방분권 강화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도시계획에서 해당 자치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최근5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청장이 발언한 경우는 드문 상황에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만 8건 발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항을 준용토록 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제6항부터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언, 붙임1), 이 규정 개정이 선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안전 심의시 해당 자치구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보편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하겠음.

- 참고로, 이 사안은 2017 분권협의회(붙임2)를 통해 강서구가 제안한 사항으로, 앞으로도 분권협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 권한 조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 확대

- 안 [별표4]제2호자목·더목·러목은, 어린이공원·소공원 및 일정규모(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문화시설·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권한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공원** : 공원의 여러 유형(붙임3) 중 자치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결정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하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자료: 시설계획과)

- 전체공원의 76%(총 2,203개소 중 1,680개소). 단, 면적기준 2.2%(3.1km<sup>2</sup>)

- **문화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으로(붙임4) 도서관이 문화시설로 편입된 가운데, 자치구 결정대상을 도서관에서 문화시설로 확대하고,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기위임된 다른 도시계획시설규모<sup>2)</sup>를 감안하여 부지면적 기준을 3천제곱미터 이하(총 131개소 중 81개소(62%))로 하되,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과 같이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대상<sup>3)</sup>은 자치구

2) 3천m<sup>2</sup>이하 : 공공공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5천m<sup>2</sup>이하 : 주차장)  
(붙임6)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

결정대상에서 제외함.

- 시장 :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총 161개소 중 86개소(53%))를 자치구로 위임함.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함으로써 주민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sup>4)</sup>, 서울시의 행정력 분산도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2016.2. 신설)

4) 자치구 결정시 약 3개월 소요되나, 서울시 결정시 약 6개월 소요(도시계획과 답변)

※ 결정권한 위임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이 조례개정안

- 총 52개<sup>5)</sup> 도시계획시설 중 자치구 위임 : 16개 → 18개  
(시장이 입안하거나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 제외)

권한 위임	현 행	개 정 안
도 로	폭 12m 이하 또는 구도	-
주 차 장	부지면적 5천㎡ 이하	-
광 장	폭 12m이하 도로 또는 구도 접속	-
공공공지	부지면적 3천㎡ 이하	-
수도공급설비	저수용량 5천톤이하 배수지 및 가압장	-
전기공급설비	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관련 송배전시설	-
가스공급설비	정압기 및 배관	가스배관시설
학 교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	-
공공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체육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	-
사회복지시설	전 체	-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	-
하 천	소하천	-
방수설비	전 체	-
하 수 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이외의 시설	-
도 서 관	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 제외)
공 원	-	어린이공원·소공원(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시 장	-	부지면적 3천㎡ 이하

5) 시행령 개정('18.12.27. 시행)으로 52개 도시계획시설이 46개로 정리될 예정임.

## □ 자치구 위임대상 명확화

- 안 [별표4]제2호사목·타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토대로 자치구 위임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규 적용의 혼선<sup>6)</sup>을 방지코자 한 것으로서,
  - 지역 단위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명확히 하고<sup>7)</sup>,
  -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배관시설로 정비함<sup>8)</sup>
- 안 [별표4]제5호는 이 조례의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도로법·철도건설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의제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도 자치구가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한 사항임. 대체로 타 법률에서 토지이용 및 시설 관련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제하되 지형도면은 의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형도면 고시의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세부 현황 및 지적사항을 보다 잘 아는 자치구가 소관토록 한 것으로 이해됨.

6) 예를 들어, 공공청사 위임기준인 '지역 단위청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지 않는 공공시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동부도로사업소 등) 결정(변경) 시 그 성격에 따라 자치구와 서울시간 협조를 통해 결정부서를 정하여 왔음.

※ 지역단위청사 결정사례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마포구 결정 `14.7)  
동부도로사업소(서울시 결정 `13.10)

7) 4-5-4-1.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1) 근린공공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2) 공공업무시설 :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

8)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은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등으로 구분됨

다만, 이와 같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단순 사무들 위주로 자치구에 위임한다면 자치구의 업무량만 방대해 질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권한위임 범위와 사무가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위임절차 보완

- 안 [별표4]제2호본문은 시 결정권한인 도시계획시설 내에 자치구 결정권한 시설을 중복 결정시에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점차 입체화·복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관리의 일관성·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 인용조항 정비

- 안 제54조제13항은 시행령 개정('16.2. 붙임5)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이와 같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된지 거의 3년이 경과된 후 조례를 정비하는 등 법령과 조례 간의 시간적 차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종 합”

-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가 권한을 위임·이양받을 사항 그리고 서울시가 자치구로 권한을 위임·이양할 사항이 각각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구의 발언권 강화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확대 등을 담은 이 조례 개정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도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 협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⑫ (생략)</p> <p>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  <del>제6항</del>-----                      -----                      -----.</p>
<p>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p> <p>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당해 자치구의 도시계획관련 사항에 관하여 <u>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u>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59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u>  <u>도시계획위원회</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p>	<p>[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p>

현행		개정안	
사무명	관계법령	사무명	관계법령
<p>1. (생략)</p> <p>2. <u>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u></p> <p>가. ~ 바. (생략)</p> <p>사. <u>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u></p> <p>아. (생략)</p> <p>자. <u>도서관(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함)</u></p> <p>차. ~ 카. (생략)</p> <p>타. <u>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u></p> <p>파. ~ 너.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3. ~ 4의2. (생략)</p> <p>5. <u>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u></p> <p>6. ~ 14. (생략)</p>	<p>○(생략)</p> <p>○법 제29조 제30조</p> <p>영 제23조 제25조</p> <p>○(생략)</p> <p>○법 제33조 제48조·제53조, 영 제28조 제42조·제50조</p> <p>○(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u>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u>)</p> <p>아. (현행과 같음)</p> <p>자. <u>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u></p> <p>차. ~ 카. (현행과 같음)</p> <p>타. -----(<u>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u>)</p> <p>파. ~ 너. (현행과 같음)</p> <p>더. <u>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며,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u></p> <p>러. <u>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u></p> <p>3. ~ 4의2. (현행과 같음)</p> <p>5. <u>지형도면-----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u></p> <p>6. ~ 14. (생략)</p>	<p>○(현행과 같음)</p> <p>○-----</p> <p>-----</p> <p>-----</p> <p>○(현행과 같음)</p> <p>○-----</p> <p>-----</p> <p>-----</p> <p>○(생략)</p>

〈붙임1〉 자치구의 위원회 발언 현황 (자료: 도시계획과)

- 최근5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치구가 발언한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총 8 건

연번	심의일자	안 건 명	자치구 참석자	비고
1	2017.01.25	신탄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양천구 균형개발과장	
2	2017.02.22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용산구 재정비사업과장	
3	2017.04.26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동작구 행정타운조성과장	
4	2017.11.08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금천구 도시계획과장	
5	2017.11.22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종합 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강남구 도시계획과장	
6	2018.04.25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7	2018.07.11	송파대로(송파대로 제1지구), 삼전, 위례성길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송파구 도시계획과장	
8	2018.08.22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종로구 문화관광국장	

〈붙임2〉 2017년 분권협의회 개최 개요 (자료: 시설계획과)

□ 추진배경

-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고, 市와 區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자치구 역량강화를 위한 분권의제 발굴 필요
- 자치구 수요에 기반한 지방분권 의제를 발굴·선정함으로써, 市 사무의 효율성 및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17.12.6.(수) \* '17년 최초 실시
- 참석대상 : 서울시(기획조정실장 및 사업담당 소관 실·본부·국장),  
3개 자치구 부구청장,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명 등
- 회의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 논의하여 '추진안건' 선정
- 상정안건 :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17.9월), 분권 관련 자치구 제출의제('15.7월) 및 구청장협의회 안건(126~135차) 등 검토·발굴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에 기반하여 지방분권 의제 충족여부 등 검토



□ 회의결과

- (강서구 제안) 市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사항 반영 결정

(강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현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및 발언가능
	⇒ (보완수용)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토론과정 참여 이외의 출석 및 제안설명은 사전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붙임3〉 공원시설 관련 (자료:시설계획과)

공원의 세분		규모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결정	입안	결정	
생활권 공원	도시자연공 원	-		구청장	시장	구청장	시장	
	근린공원	10만㎡ 이상	10만㎡ 미만					
		어린이공원					-	
	소공원	-						
주제 공원	문화공원 등	10만㎡ 이상	10만㎡ 미만	구청장	시장	구청장	시장	
		10만㎡ 미만						
비고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한 법률 제16조의2		
			조례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도시공원 조례 제31조		
	관련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市도시공원위원회 또는 區도시계획위원회		

〈붙임4〉 도서관의 문화시설 편입 관련 (자료: 시설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2.12.)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u>도서관</u>·<u>연구시설</u>·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p> <p>5. ~ 7.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기반시설) ①- - - - -</p> <p>-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p> <p>- - - - - <u>연구시설</u> - - - - -</p> <p>- - - -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6.2.12.)

개정 전	개정 후
<p><b>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b>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u>도서관</u>·<u>연구시설</u>·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u>문화시설</u>, <u>도서관</u>,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p>	<p><b>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b> ①- - - - -</p> <p>- - - - -</p> <p>- - - - -</p> <p>- - - - - <u>연구시설</u> - - - - -</p> <p>- - - - -</p> <p>-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 - - - - <u>문화시설</u> - - - - -</p> <p>- - - - -</p>

〈붙임5〉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도시계획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2.11.)

- 개발진흥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법이 개정 ('16.2.)되어 시행령 제84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용했던 조항이 미뤄지게 됨

개 정 전	개 정 후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②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② (개정전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 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 -----
1. (생략)	1. (개정전과 같음)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 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 6. (생략)	3. ~ 6. (개정전과 같음)
④ (생략)	⑤ (개정전과 같음)
⑤ (생략)	⑥ (개정전과 같음)
⑥ (생략)	⑦ (개정전과 같음)
⑦ (생략)	⑧ (개정전과 같음)
⑧ (생략)	⑨ (개정전과 같음)

〈붙임6〉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 무 명	관계법령
<p>1. 다음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b>둘</b>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음)</p> <p>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마.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의 처리</p> <p>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p> <p>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다. 주차장(<b>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b>,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 하천(소하천에 한함)                      마. 체육시설(<b>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b>,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 공공공지(<b>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b>)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                      자. 도서관(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함)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타.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파. 방수설비                      하. 사회복지시설                      거. 하수도(<b>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b>)                      너. <b>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b></p>	<p>○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 제6조, 제7조</p> <p>○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p>

사 무 명	관계법령
<p>3. 다음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p> <p>가.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결정(공원·녹지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p> <p>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p> <p>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결정</p> <p>마. 가목 및 나목에 <b>따라</b>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변경결정</p> <p>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p> <p>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p> <p>나.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다.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획지면적 변경인 경우</p> <p>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마.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p> <p>바.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p> <p>사.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p> <p>아.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b>해당</b>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다만,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외한다)</p> <p>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p>	<p>○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3항</p> <p>○법 제30조제5항 단서 영 제25조제4항 조례 제18조</p>

사 무 명	관계법령
<p>카.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타.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파.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하.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거.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너.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더. 공개공지, 보행전용도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p> <p>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p> <p>5.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p> <p>6.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은 제외한다)</p> <p>6의2.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구청장이 결정한 시설과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수의무자인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p> <p>8. 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조례에서 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다만, 개발행위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석의 채취            라. 토지분할            마. 물건을 쌓는 행위</p>	<p>○법 제32조            영 제27조</p> <p>○법 제33조·제48조·제53조,            영 제28조·제42조·제50조</p> <p>○법 제34조, 제48조            영 제29조, 제42조</p> <p>○법 제47조            영 제41조            조례 제10조, 제14조</p> <p>○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영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영 제55조제3항제3의2 제외)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조례 제21조제3항 제외)</p>

사 무 명	관계법령
9.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법 제63조 영 제60조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공고 및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의 검토(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85조 영 제95조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시행자 지정(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통지한 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86조 영 제96조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및 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 및 그에 따른 공시송달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 영 제97조부터 제101조까지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의 수리 및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교부, 공사완료공고(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98조 영 제102조
11.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30조
1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한한다)	○법 제133조
1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 및 고시할 수 있음)	
14. 사업부지 면적(기부채납 면적 포함)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용도지역 변경 또는 층수완화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